

「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구미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관내 시민의 이용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, 특정 종목 사용료 신설 요구 등에 따른 사용료를 정비하고 「만 나이 통일법」 시행에 따라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외요금 및 특정종목 일일요금 신

설 등 사용료 정비(안 별표 1)

○ 「만 나이 통일법」 시행 관련 규정 반영(안 별표 1, 별표 4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: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관외 이용자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집행기관에서는 요금에 관한 이용자들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요금 등의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